

# 다케시마

## Facts&Figures

한국이 실력으로 일본에서 빼앗아  
1954년부터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도서 영토

다케시마는 1905년 1월,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이 되었습니다. 이 각의 결정으로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재확인했고,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평온하고 계속적이며 실효적으로 다케시마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Facts & Figures(F&F)는 다케시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이해하기 위해 공문서, 조사보고서 등의 '사실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1. 영유권—법과 역사

다케시마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자료. 국내법, 국제법적 관점

....p.2

열람하기

### 2. 지리

다케시마의 위치, 지형, 지질 등. 과거 조사보고서를 통해

...p49

열람하기

### 3. 해양·기상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 지형

...p.51

열람하기

### 4. 생태계

1906년 시마네현 시찰단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다케시마의 생태계

...p.53

열람하기

### 5. 산업

메이지 시대 민간인에 의한 다케시마의 개척과 이용을 중심으로 게재

...p.54

열람하기

### 6. 환경

인간이 거주한다는 관점에서 본 다케시마의 환경과 관련된 정보

...p.61

열람하기

### 7. 보충설명

다케시마에서의 어업활동 중단 전 마지막 어업권 행사에 대해

...p.62

열람하기

# 1. 영유권—법과 역사

17세기, 요나고의 상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건너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로상에 있던 다케시마가 발견되었고, 그 섬에서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904년 오키섬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강치잡이를 목적으로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대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의 방식에 따라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케시마 Facts & Figures에서는 (1)~(3)으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일본이 다케시마에 관여해 온 사실, 영토 편입 조치와 실효적 지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사건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1) 일본과 다케시마의 역사적 관계

17세기 전반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이 시작되었고 항로상에 있는 다케시마도 이용	<a href="#">열람하기</a>
17세기 중반	다케시마 어업활동의 시작	<a href="#">열람하기</a>
1690년대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논쟁이 생겨도 다케시마는 의제에 오르지 않음	<a href="#">열람하기</a>
1836년	하마다의 하치에몬이 다케시마에 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건너감	<a href="#">열람하기</a>
1849년	서양에서 리앙쿠르 암초로 명명, 울릉도를 포함하여 섬 이름에 혼란이 생기다	<a href="#">열람하기</a>
1904년 9월 29일	나카이 요자부uro가 일본 정부에 영토 편입과 대여를 신청하다	<a href="#">열람하기</a>
1904년 11월 15일, 11월 30일	시마네현 내무부장이 오키도사(섬의 행정 관리)에게 섬 이름 등에 대해 조회 / 오키도사는 내무부장에게 회답	<a href="#">열람하기</a>

## (2) 국제법상의 영토 편입과 그 후의 실효적 지배

1905년 1월 28일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섬 이름, 소속, 소관에 대한 각의 결정	<a href="#">열람하기</a>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지사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고시함(시마네현 고시 제40호)	<a href="#">열람하기</a>
1905년 4월 14일	어업 단속 규칙 개정,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이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이 되다	<a href="#">열람하기</a>

1905년 5월 17일	다케시마가 관유지 대장에 등록되다	열람하기
1905년 6월 5일	나카이 요자부로 등에 대한 강치잡이가 허가되다	열람하기
1905년 8월 19일	시마네현지사의 다케시마 시찰	열람하기
1906년 3월 1일	현세 부과 규칙 개정, 강치잡이에 과세	열람하기
1906년 3월 27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현지조사	열람하기
1906년 7월	강치잡이 업자에 대한 관유지 임대료 설정. 이후 5년마다 강치잡이 허가증을 발행하고 매년 임대료를 징수	열람하기
1908년 6월 30일	어업 단속 규칙 개정, 다케시마 및 앞바다20정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	열람하기
1921년 4월 1일	시마네현 어업 단속 규칙 개정, 강치잡이 업자에게 다케시마 주변에서의 김, 다시마 등의 채취를 허가	열람하기
1939년 6월 6일	다케시마에 인(燐)광석 시굴권이 설정되다	열람하기

###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건·법적 지위

1946년 1월 29일	GHQ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SCAPIN-677)	열람하기
1946년 6월 22일	GHQ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SCAPIN-1033)	열람하기
1947년 9월 16일	GHQ가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SCAPIN-1778)	열람하기
1949년 9월 19일	GHQ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SCAPIN-2046)	열람하기
1951년 7월 6일	GHQ가 폭격 훈련장으로 재지정(SCAPIN-2160)	열람하기
1951년 7월 19일	한국이 미국에게 평화조약 초안의 수정을 요구	열람하기
1951년 8월 10일	미국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약 초안 수정 요구를 거절	열람하기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열람하기
1952년 1월 18일, 1월 28일	한국 대통령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선포(이승만 라인: 다케시마를 라인 안쪽의 한국 측에 포함시킴)/일본 정부는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과 다케시마 영토권 주장에 대해 항의	열람하기
1952년 4월 25일	GHQ가 일본 선박의 조업허가 구역을 철폐	열람하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a href="#">열람하기</a>
1952년 7월 26일	미일안보조약 및 행정협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제공	<a href="#">열람하기</a>
1953년 3월 19일	다케시마 폭격 훈련 구역 지정 해제	<a href="#">열람하기</a>
1953년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장에 의한 상륙 조사	<a href="#">열람하기</a>
1953년 6월 10일	시마네현이 희망자 3명에게 강치잡이를 허가	<a href="#">열람하기</a>
1953년 6월 17일	다케시마 주변 특별단속 및 조사 시행	<a href="#">열람하기</a>
1953년 6월 18일	시마네현이 오키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해산물 어업권을 허가	<a href="#">열람하기</a>
1953년 6월 27일	해상보안청·시마네현에 의한 상륙 조사	<a href="#">열람하기</a>
1953년 7월 12일	순시선 '헤쿠라'가 다케시마에서 총격을 당하다(제4차 특별단속)	<a href="#">열람하기</a>
1953년 8월 3일	다케시마 주변 해역 제 5 차 특별단속	<a href="#">열람하기</a>
1953년 10월 6일	다케시마 주변 해역 제10차 특별단속	<a href="#">열람하기</a>
1954년 8월 23일	순시선 '오키'가 총격을 받다(제28차 특별단속)	<a href="#">열람하기</a>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한국에 제의	<a href="#">열람하기</a>
1954년 10월 28일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	<a href="#">열람하기</a>
1954년 11월 21일	순시선 '오키' 및 '헤쿠라'가 포격을 당하다(제30차 특별단속)	<a href="#">열람하기</a>

## 1. 영유권—법과 역사 (1)

### 17세기 전반

##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이 시작되었고 항로상에 있는 다케시마도 이용

요나고의 해운업자인 오야 진키치가 에치고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표류했다.

그 후 도쿠가와 막부의 도해(渡海) 허가를 받은 오야, 무라카와 두 집안은 도쿠가와 가문의 아오이(아욱) 문장 깃발을 배에 달고 번갈아가면서 해마다 이 섬에 가서 강치잡이, 전복 채취 등을 하였다. 전복은 장군 가문과 막부의 수뇌부에 진상되었고, 두 집안은 교대로 에도에서 장군을 알현하였다. (Ref.1)

당시 마쓰시마로 불리던 현재의 다케시마는 요나고에서 오키를 경유하여 '다케시마(울릉도)' 로 가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박지나 어장으로 이용되었다.

Ref.1: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오카시마 가문 자료」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출처

#### Ref.1: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오카시마 가문 자료」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참고 자료

오야가유서실기상(大谷家由緒實記上)

향토 자료 무라카와가부다케시마도해(郷土資料村川家附竹島渡海)

## 1. 영유권—법과 역사 (1)

### 17세기 중반

## 다케시마 어업활동의 시작

지금의 다케시마에서 어업활동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중반부터였다. 오야 가문의 3대손인 오야 규에몬 카쓰노부는 1681년의 회신에서 '25년 전에 하사 받은 이 작은 섬에서도 강치의 기름을 짠다'고 적었다. (Ref.1)

돗토리의 상인인 이시이 소에쓰가 오야 도키에게 보낸 편지(1650년 무렵)에도 무라카와 이치베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를 했다고 하는 기술이 있다. (Ref.2)

#### 출처

##### Ref.1 :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竹島渡海由来記抜書)』,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오카시 마 가문 자료」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Ref.2 :

『신수돗토리시사(新修鳥取市史)』제 2 권, 1988

## 1. 영유권—법과 역사 (1)

### 1690년대

##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논쟁이 생겨도 다케시마는 의제에 오르지 않음

1692년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울릉도)에서 조선인과 조우하였다. 이듬해인 1693년에는 전년보다 많은 수의 조선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야 가문의 사공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요나고에 데려왔고, 돗토리번(藩)이 조사를 시행했다. 돗토리번 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막부는 두 사람의 송환을 지시하고, 또 조선인의 '다케시마'(울릉도) 출어를 금지할 것을 조선 정부와 교섭하도록 쓰시마번에 지시하였다. 조선은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이름은 달라도 같은 섬이며, 울릉도는 옛날부터 조선의 섬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1696년에 이르러 막부는 일본인에 대해 '다케시마'(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간 교섭 중에 지금의 다케시마와 그 귀속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Ref.1)

막부에 의한 '다케시마'(울릉도) 도항 금지 후인 1696년 6월 안용복은 오키를 경유하여 돗토리번에 도착, '조울양도감세장'이라는 관명을 사칭하여 무언가를 호소하려 하였다. (Ref.2) 막부는 '귀국하도록 청하고 돌려보내라'고 지령하고, 안용복 일행은 조선으로 돌아갔다. (Ref.1)

안용복은 오키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강원도에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Ref.4) 그러나 조선 정부는 안용복의 언행에 관하여 '우매한 떠돌이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알 바 없다'고 하였다. (Ref.3)

### 출처

#### Ref.1 :

『다케시마기사(竹嶋紀事)』1726년, [제1기]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자료편 (시마네현 홈페이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 Ref.2 :

『이나바지(因幡志)』,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오카시마 가문 자료」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Ref.3 :

『속종실록』권31, 10~11정

#### Ref.4 :

무라카미 가문 문서

## 1. 영유권—법과 역사 (1)

1836년

# 하마다의 하치에몬이 다케시마에 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건너감

하마다번(시마네현 서부)의 마을 사람인 하치에몬은 번의 재정에 기여하고자 1833년에 '다케시마'(울릉도)에 건너가서 목재와 해산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사실이 1836년에 막부에 알려져 하치에몬은 체포되고 처형당하였다. 이 도항에는 하마다번의 최고 가신인 오카다 다노보와 에도야시키(에도에 있던 각 번의 저택)도 관여하였다(번주인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 야스토는 당시 막부의 최고 가신이였다). 하치에몬의 진술에 의하면 도항에 관한 에도야시키의 판단은 '다케시마'(울릉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도항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오카다의 판단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 도항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결국 하치에몬은 오카다 가문과 협의하여 '에도에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 간다는 명목 하에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항'하기로 하였다. (Ref.1)

또, 이 사건의 판결문에도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에 간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에 건너갔다'는 언급이 있다. (Ref.2)

### 출처

#### Ref.1:

『다케시마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전(도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 Ref.2:

『무숙엽입일건 (無宿狩込一件)』권1(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구 막부인계서)

### 참고 자료

신궁사청(神宮司庁)편『고사유원(古事類苑)-외교부』1903, pp.787-788

모리스 가즈오 『하치에몬과 그 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사건과 근세 해운(八右衛門とその時代-今津屋八右衛門の竹嶋一件と近世海運)』, 하마다시 교육위원회, 2002

## 1. 영유권—법과 역사 (1)

1849년

### 서양에서 리앙쿠르 암초로 명명, 울릉도를 포함하여 섬 이름에 혼란이 생기다

1849년에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리앙쿠르)호가 지금의 다케시마를 '발견'하였다. 그 후 다케시마는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로 불리게 되었다. 1787년에 프랑스의 탐험가인 라페루즈의 함대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Dagelet(다쥬레섬)라고 명명, 1789년 영국의 탐험가인 콜넷은 울릉도를 Argonaut(아르고노트섬)라고 명명하였다. 두 섬은 모두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위도와 경도가 다르다고 하여 서양의 지도에는 두 개의 섬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한편, 나가사키 데지마에 체류하고 있던 지볼트는 1840년에 「일본도(日本圖)」를 제작했는데, 일본에서 가져간 지도(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로, 다쥬레 섬을 '마쓰시마'로 간주하였다(지금의 다케시마는 당시에는 서양에서 발견하기 전이었으므로 서양 지도에는 없었다). 그 후, 아르고노트섬은 측량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도상에서 지워졌고, 결과적으로 '다케시마'로 불린 울릉도(다쥬레섬)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어 섬 이름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Ref.1)

#### 출처

**Ref.1:**

China pilot(영국해군편 수로지) 제4판, 1864, 제15장 「일본해」

#### 참고 자료

가와카미 겐조 저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고콘쇼인, 1966

## 1. 영유권—법과 역사 (1)

1904년 9월 29일

# 나카이 요자부로가 일본 정부에 영토 편입과 대여를 신청하다

오키섬에 사는 사업가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3년 이전부터 지금의 울릉도를 오가는 도중 지금의 다케시마에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 섬의 영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외국과의 문제 등 예측 불가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과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1904년 9월 29일 자로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 외무대신(고무라 주타로), 농상무대신(기요우라 게이고)에게 '량코섬(지금의 다케시마)'의 일본 편입 및 10년간의 대여를 신청하였다. (Ref.1)

보충설명: '량코섬'은 지금의 다케시마의 서양 이름 Liancourt Rocks에서 유래한 속칭

### 출처

#### Ref.1:

[「량코섬 영토 편입 및 대여신청『제국판도관계잡건\(帝国版图關係雜件\)』외교사료관 소장외교기록1.4.1.7](#)

#### 참고 자료

시마네현『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50-67(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1)

1904년 11월 15일, 11월 30일

### 시마네현 내무부장이 오키도사(섬의 행정 관리)에게 섬 이름 등에 대해 조회 / 오키도사는 내무부장에게 회답

나카이 요자부로(野村)의 신청을 받은 내무성은, 외무성에 대해 1904년 10월 15일 자로 의견 조회를 하였다(내무차관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외무차관 진다 스테미 앞으로 보냄). (Ref.1)

그 후 시마네현 내무부장(호리 신지)은 1904년 11월 15일 자로 오키도사(히가시 분스케)에게 나카이 요자부로의 신청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인데, 소속을 정하는 경우에는 오키도청의 소관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지, 또 섬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Ref.2)

시마네현 내무부장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오키도사는 의견조회한 섬은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고, 오키도청의 소관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 또 울릉도가 마쓰시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 불리던' 명칭인 '다케시마'로 명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답하였다(1904년 11월 30일). (Ref.3)

#### 출처

**Ref.1:**

「나카이 요자부로 신청의 건」『제국판도관계잡건(帝国版図關係雜件)』외교사료관 소장 외교기록 1.4.1.7

**Ref.2:**

다케시마「서제1073호」시마네현 소장, 1904

**Ref.3 :**

다케시마「을서제152호」시마네현 소장, 1904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5년 1월 28일

#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섬 이름, 소속, 소관에 대한 각의 결정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이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내각 총리대신(가쓰라 다로)에게 각의 제안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 북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이며, 타국이 점령한 흔적이 없는 섬이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어부들의 숙소를 짓고 인부들을 동원해 강제잡이를 하며, 영토 편입과 대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과 섬 이름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섬 이름을 '다케시마'라 하고 시마네현에 소속시키며,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가 열렸고, 1903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가 해당 섬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관계 서류를 보면 명백하고, 국제법상 점령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내무대신의 제안대로 일본의 소속으로 하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하였다. (Ref.1)

### 출처

#### Ref.1:

「울릉도에서 북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라 이름 짓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無人島ヲ竹島ト名ケ島根県所属隱岐島司ノ所管ト為ス)

『공문류취』제29편권1정강문행정구, 1905

####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1』2011, pp.153-155(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5년 2월 22일

### 시마네현지사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고시함(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1월 28일, 영토 편입 각의 결정을 받고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은 1905년 2월 15일 자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의 북서 85해리에 있는 도서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할 것,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할 것을 관내에 고시하도록 시마네현지사(마쓰나가 다케키치)에게 훈령하였다. (Ref.1)

이 훈령을 받은 시마네현지사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 자)에서 다케시마의 명칭, 소속, 소관에 대해 고시하였다. (Ref.2)

또 같은 날 시마네현지사는 시마네현 서(庶)제11호로 오키도청에 대해 명칭, 소속, 소관에 대해 훈령하였다. (Ref.3)

#### 출처

**Ref.1:**

[「훈제87호」1905](#)

**Ref.2:**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Ref.3:**

[「시마네현 서제11호」1905](#)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5년 4월 14일

# 어업 단속 규칙 개정,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이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이 되다

시마네현은 강치의 남획을 막기 위해 1905년 4월 14일 시마네현령 제18호로 어업 단속 규칙(시마네현령1902년 제130호)을 개정하여 강치 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정하였다. (Ref.1)

출처

Ref.1:

[「시마네현령1905년 제18호」](#)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157-159(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5년 5월 17일

### 다케시마가 관유지 대장에 등록되다

시마네현지사(마쓰나가 다케키치)는 1905년 5월 3일자로 오키도청에 다케시마의 면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고(Ref.1), 오키도청은 1905년 5월 17일자로 다케시마의 면적에 대해 약도를 첨부하여 보고를 올렸다. (Ref.2)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관유지 대장에 기재하였다. 면적은 23정(町) 3단(段) 3묘보(畝步) 라고 기재되어 있다. (Ref.3)

#### 출처

**Ref.1:**

「시마네현지 제90호」1905

**Ref.2:**

「갑토 제4호」1905

**Ref.3 :**

『오키국주길·온지·해상·지부군관유지대장』

####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86(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86(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160(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5년 6월 5일

### 나카이 요자부로 등에 대한 강치잡이가 허가되다

1905년 4월 14일 자 어업 단속 규칙 개정에 의해 다케시마에서 이루어지는 강치잡이가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같은 해 5월 20일, 나카이 요자부로, 가토 주조,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로가 허가 신청을 시마네현에 제출(Ref.1)했다. 1905년 6월 5일, 시마네현에서 이를 허가하여 허가증을 1매 교부하였다. (Ref.2)

#### 출처

**Ref.1:**

[「을농 제805호」1905](#)

**Ref.2:**

[「시마네현 농 제1926호」1905](#)

####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157-158(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72-74(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77-78(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5년 8월 19일

### 시마네현지사의 다케시마 시찰

1905년 8월 19일, 시마네현지사 마쓰나가 다케키치는 수행원 3명과 함께 다케시마를 시찰하였다. 다케시마 앞바다의 배에서 쓴 군사우편(받는이: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 보낸이: 마쓰나가 다케키치 및 수행원)에는 '메이지 38년 (1905년) 8월 19일, 새 영토인 다케시마를 순시하였다. 같이 간 일행은 마쓰나가 지사, 사토 경무장, 후지타, 오쓰카 총 네 명'이라고 쓰여있다. (Ref.1)

보충설명: 산인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사 일행은 다케시마에서 어민에게서 어린 강치 세 마리를 선물로 받아 돌아온 후, 현청 제3부 정원 저수지에 방류하여 사육하였다. 현재 이 어린 강치들은 박제 상태로 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다이샤 고등학교, 마쓰에기타 고등학교, 이즈모 고등학교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 출처

#### Ref.1:

[「군사 우편 엽서」\(1905년 8월 19일 자\)](#)

####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97-98(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현청내해돈방양(県庁内に海豚放養)」『산인신문』(1905년 8월 22일)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6년 3월 1일

### 현세 부과 규칙 개정, 강치잡이에 과세

1906년 3월 1일 시마네현령 제8호에 따라 「현세 부과 규칙」(1901년 시마네현령 제11호)이 개정되어 새로 강치잡이 세금을 정해 세목에 추가하였다. (Ref.1)

#### 출처

#### Ref.1:

[「시마네현령\(1906년 현령 제 8 호\)」현세 부과 규칙\(1901년 현령 제11호\) 일부 개정](#)

####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p.161-162(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6년 3월 27일

###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현지조사

1906년 3월, 지사의 명에 따라 시마네현 제3부장인 진자이 요시타로는 오키도사인 히가시 분스케 이하 어업, 농사, 위생, 측량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44명을 이끌고 다케시마의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일정은 3월 22일 마쓰에 출발, 3월 26일 사이고(오키섬) 출발, 3월 27일 다케시마 도착, 3월 28일 울릉도 출발, 3월 30일 마쓰에 귀착이었다. (Ref.1)

또, 시찰단의 한 사람인 오쿠하라 후쿠이치(오쿠하라 헤키운)는 『다케시마 및 울릉도』를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다케시마의 지리, 기후, 생물, 어업 등의 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다케시마의 전경 사진이 담겨있다. (Ref.2)

#### 출처

**Ref.1:**

「다케시마 시찰」(히가시 분스케 오키도사의 출장 보고서)

**Ref.2:**

오쿠하라 헤키운『다케시마 및 울릉도』1907

#### 참고 자료

다무라 세이자부로『시마네현 다케시마 신연구』시마네현, 1965, pp.61-62

오쿠하라 헤키운『다케시마 및 울릉도』1907(복각판)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6년 7월

### 강치잡이 업자에 대한 관유지 임대료 설정. 이후 5년마다 강치잡이 허가증을 발행하고 매년 임대료를 징수

1906년 이후, 다케시마(관유지)는 강치잡이 업자에게 임대되었고,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Ref.1)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 허가증은 그 후 5년마다 발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시적으로 어업이 중단되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후인 쇼와 28년(1953년) 6월에 시마네현지사가 오키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공동 어업을 허가하였고, 하시오카 다다시게 외 2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하였다. (Ref.2)

#### 출처

**Ref.1:**

[「시마네현 지2034호」1906](#)

**Ref.2:**

[「시마네현 해면어업 조정규칙」\(1951년 시마네현 규칙 제88호\)](#)

#### 참고 자료

다무라 세이자부로 『시마네현 다케시마 신연구』복각보정판, 시마네현, 2010, pp.53-56  
쇼와 28년(1953년) 시마네현이 발행한 '강치잡이' 어업허가서(시마네현 농림수산부 수산과 소장)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08년 6월 30일

# 어업 단속 규칙 개정, 다케시마 및 앞바다20정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

시마네현은 1908년 6월 30일 현령 제48호에 의해 「어업 단속 규칙」(1902년 현령 제130호)를 개정하고, 다케시마 및 그 앞바다 20정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Ref.1)

### 출처

**Ref.1:**

「시마네현령 1908년 제48호」

**Ref.2:**

title

### 참고 자료

시마네현 『시마네현 소장 행정 문서 1』2011, p.175(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제2집)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21년 4월 1일

### 시마네현 어업 단속 규칙 개정, 강치잡이 업자에게 다케시마 주변에서의 김, 다시마 등의 채취를 허가

시마네현은 1921년 4월 1일, 현령 제21호에 의해 당시의 시마네현 어업 단속 규칙(1911년 현령 제54호)을 개정하고 강치잡이 업자에 대해 다케시마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해조나 조개 채취를 허가하였다. (Ref.1)

출처

Ref.1:

[「시마네현령1921년 제21호」](#)

참고 자료

다무라 세이자부로 『시마네현 다케시마 신 연구』복각보정판, 시마네현, 2010, p72, 권말「보정」p.6

## 1. 영유권—법과 역사 (2)

1939년 6월 6일

### 다케시마에 인(燐)광석 시굴권이 설정되다

1935년 5월, 다케시마의 인광석 시굴권 신청이 오사카 광산감독국에 제출되었다. 1939년 6월 6일, 고바야시 겐타로 외 1 명에 대해 다케시마 인광석 시굴권이 허가되고, 상공성(商工省)은 9월 19일자로 관보에 공표하였다. (Ref.1)

출처

Ref.1:

「광업사항(상공성) 시굴권 허가」『관보』제3813 호, 1939.9.19, p.619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46년 1월 29일

### GHQ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SCAPIN-677)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677에 의해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 정치상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하도록 일본 정부에 지령'하고, '울릉도, 다케시마, 제주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Ref.1)

동시에 SCAPIN-677은 '이 지령에 있는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 제 8 항에 있는 모든 작은 섬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낸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Ref. 1)

보충설명: GHQ는 점령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일본의 영토를 처분하는 권한은 없었다. 영토의 결정은 평화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처

#### Ref.1: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지령(SCAPIN)제677호「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SCAPIN-677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946/01/29)(외무성 홈페이지)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46년 6월 22일

### GHQ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SCAPIN-1033)

GHQ는 1946년 6월 22일, 일본 어선의 조업 허가구역을 확대하였다. 그 지령 중에 '다케시마 12해리 이내에 일본의 선박 및 승무원이 접근할 수 없고, 이 섬에는 어떠한 접촉도 가지지 못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SCAPIN-1033에는 '국가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Ref.1)

보충설명: 일본 어선의 조업 허가구역을 나타내는 선은 '맥아더 라인'이라 불렀다. 맥아더 라인을 둘러싸고도 영토 처리는 평화조약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미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조선 반도 남쪽을 통치한 미군정청이 1947년 8월에 작성한 보고서에도 '...이 섬의 관할권에 대한 최종적 처분은 평화조약(에 의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적혀 있다(Ref.2). 또 맥아더 라인은 평화조약 발효를 앞두고 폐지되었다.

#### 출처

##### Ref.1: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지령\(SCAPIN\)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SCAPIN-1033 :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1946/06/22\)\(외무성 홈페이지\)](#)

##### Ref.2:

["U.S. Army Military Government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1, August 1947," Pt.1, sec.1, para.18\(시마네현 홈페이지\)](#)

#### 관련 정보

[1952년 4월 25일 GHQ가 일본 어선의 조업허가구역을 철폐](#)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47년 9월 16일

### GHQ가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SCAPIN-1778)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지령 SCAPIN 제1778호는 1. 다케시마를 극동 공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하고, 2. 해당 훈련 구역의 사용은 일본 민정 당국을 통해 오키 및 혼슈 서부의 주민에게 통지한 후에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Ref.1)

출처

Ref.1:

SCAPIN-1778: LIANCOURT ROCKS BOMBING RANGE(1947/09/16)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49년 9월 19일

### GHQ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SCAPIN-2046)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9년 9월 19일, SCAPIN-2046에 의해 ‘일본 선박은 허가구역 내에서 현재 일본 정부의 행정 하에 있지 않은 어떠한 육지에 대해서도 3해리 이내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지령하였다. (Ref.1)

출처

Ref.1:

[SCAPIN-2046: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1949/09/19\)](#)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1년 7월 6일

### GHQ가 폭격 훈련장으로 재지정(SCAPIN-2160)

GHQ는 1951년 7월 6일 , 다케시마를 폭격 훈련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지령을 일본 정부에 대해 시행하였다 . SCAPIN-2160에는 '...SCAPIN-1778의 폐지 , 2. 리앙쿠르 암초(다케시마)에 대한 폭격 훈련 구역 지정, 3. 위험구역 a. 지상 해상의 위험 구역: 리앙쿠르 암초...의 반경 5마일 이내의 구역 b. 공중의 위험구역: 리앙쿠르 암초의 반경 5마일 상공 30,000피트까지의 공역, 4. 오키 열도의 주민 및 북위 40도까지의 혼슈 서해안의 모든 항만 주민은 이 훈련 구역을 사용하기 15일 전에 통지된다. 15일을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일 간격으로 경고가 해당 주민에게 통지된다. 그 정보는 총사령부 정치국에서 일본 정부로 전달되고, 일본 정부는 관계지역의 민정 당국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Ref.1)

출처

Ref.1:

[SCAPIN-2160: LIANCOURT ROCKS \(TAKE-SHIMA\) BOMBING RANGE\(1951/07/06\)](#)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1년 7월 19일

### 한국이 미국에게 평화조약 초안의 수정을 요구

1951년 7월 19일, 한국의 양유찬 주미대사는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과 만나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정 요구를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그중에서 1951년 6월에 작성된 조약 초안(개정미영초안)의 조선 포기 조항인 제 2 조 a를 '...조선을 비롯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여 일본에 의해 조선 합병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다. (Ref.1)

출처

**Ref.1:**

[한국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문\(워싱턴 국립공문서관 소장 NARA RG59.Lot54 D423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Box 8, Korea\)\(외무성 홈페이지\)](#)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1년 8월 10일

# 미국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약 초안 수정 요구를 거절

대일 평화조약 초안에 대해 1951년 7월 19일에 한국이 제출한 다케시마를 한국에 포함하려는 수정 요구에 대해 미국은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같은 해 8월 10일 자문서로 회신하고 ‘...유감이지만 미합중국 정부는 해당 제안에 관한 수정에 찬성할 수 없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는 리앙쿠르 암초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도인 이 돌섬은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절대 없으며, 1905년 무렵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Ref.1)

### 출처

#### Ref.1:

[국무장관\(대리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 대사에게 보낸 공문\(워싱턴 국립공문서관 소장 NARA RG59. Lot54 D423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Box 8, Korea\)\(외무성 홈페이지\)](#)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1년 9월 8일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정식 명칭은 Treaty of Peace with Japan(일본과의 평화조약)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되고,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조약 당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44개국과 일본이며,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주요 국가는 소련, 중국, 인도 등이다. 한국은 당사국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연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서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조선포기조항(제 2 조 a)은 1951년 6월 개정된 미영의 초안대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었다. (Ref.1)

출처

Ref.1:

[Treaty Of Peace With Japan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국립 공문서관 홈페이지\)](#)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2년 1월 18일, 1월 28일

### 한국 대통령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선포(이승만 라인: 다케시마를 라인 안쪽의 한국 측에 포함시킴)/일본 정부는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과 다케시마 영토권 주장에 대해 항의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은 대통령 선언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선포하였다. 이 선언은 한반도 주변의 자연 자원, 광물 및 수산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역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 수역은 공해 및 그 경계선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하고 있었다. (Ref.1)

일본 정부는 1952년 1월 28일, 공해상의 불법적인 선 긋기에 항의하고, 더불어 '한국은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해의 작은 섬에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듯 하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허위 주장, 또는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Ref.2)

#### 출처

##### Ref.1: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 『일본외교 주요문서·연표(1)』『관보』호외, 단기4285년 1월 18일, pp.471-472(한국어)

##### Ref.2:

「다케시마 문제의 경위」『해외조사월보』4권11호, 1954.11, p.66

#### 참고 자료

후지이 겐지「이승만 라인 선언과 한국 정부」『제 2 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2012, pp.79-97

1952.1.28부 구술서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관계자료집(I)-왕복외교문서(1952~76)』1977, pp.1-2(시마네현 홈페이지)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2년 4월 25일

# GHQ가 일본 선박의 조업허가 구역을 철폐

평화조약의 효력 발효를 눈앞에 둔 1952년 4월 25일, GHQ는 맥아더 라인을 철폐하였다. (Ref.1)

### 출처

#### Ref.1:

[Memorandum from GHQ/SCAP to the Japanese Government AG 800.217\(25 Apr52\)DS](#)

#### 관련 정보

[1946년 6월 22일 GHQ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 \(SCAPIN-1033\)](#)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2년 4월 28일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주권(독립국의 지위)을 회복하고 연합국에 의한 점령관리에서 벗어났다. 독립의 회복으로 점령 당국의 지령이었던 SCAPIN-677도 평화조약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실효되어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 행사 정지가 해제되었다. 1952년 5월 16일, 시마네현 규칙 제29호에 따라 「시마네현 해면어업조정규칙」(1951년 시마네현 규칙 제88호)의 일부가 개정되고, 강치 어업이 다시 지사에 의한 허가어업이 되었다. 개정 이유로는 '이미 출어 희망자도 상당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포획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어 전쟁(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업의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Ref.1)

출처

Ref.1:

「1952년4월22일 어 제391호, 농림대신에게 보내는 신청서」(1952년 시마네현규칙 제29호)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2년 7월 26일

### 미일안보조약 및 행정협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제공

다케시마는 점령하에 있을 때 1947년 9월 16일자 SCAPIN-1778 및 1951년 7월 6일자 SCAIN-2160에서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1952년 7월 26일, 미일행정협정에 따라 동 협정 시행에 관한 미일 간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 훈련 구역 중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하였다. (Ref.1)

출처

Ref.1:

[「1952년 외무성 고시 제34호」『관보』호외 제73호, 1952.7.26, p.15\(외무성 홈페이지\)](#)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3월 19일

### 다케시마 폭격 훈련 구역 지정 해제

미일합동위원회(해상분과위원회)의 협의 결과 1953년 3월 19일, 다케시마는 폭격 훈련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Ref.1)

출처

Ref.1:

「시마네현소재 다케시마 폭격 연습 구역 폐지에 관한 건」(협3 합 제695호)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5월 28일

### 시마네현 수산시험장에 의한 상륙 조사

시마네현 수산시험장은 쇼와 28년(1953년) 5월 28일, 쓰시마 난류 개발조사를 하던 중 시험선 시마네마루로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어업 조업 제한구역(맥아더 라인)이 철폐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인이 상륙한 것이었다. 시마네마루는 다케시마에서 한국 국기를 게양한 동력선 6척, 무동력선 6척, 그중 1척은 잠수기선이며, 어민 60명 정도가 조개나 해조를 채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마네현청에 보고하였다. 그 후에도 9월 17일, 10월 21일, 1954년 3월 23일에 상륙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Ref.1)

출처

Ref.1: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80년사』(1983년), pp.58-61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6월 10일

### 시마네현이 희망자 3명에게 강치잡이를 허가

시마네현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 직후인 1952년 5월 16일, 시마네현 해면어업조정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잡이를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하고, 같은 해 5월 20일에는 외무장관 및 농림장관에게 '시마네현 오키지청 관내의 다케시마를 주둔군(미군)의 폭격 훈련장에서 제외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Ref.1)

그 후, 폭격 훈련 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1953년 6월 10일, 시마네현은 강치잡이를 희망하는 3명(하시오카 다다시게, 야와타 가즈마, 이케다 구니유키)에게 어업권을 허가하였다. (허가 기간: 1953년 6월 1일~1955년 12월 31일)(Ref.2)

#### 출처

**Ref.1:**

시마네현 『섭외관계철 쇼와 26년』

**Ref.2:**

「공고」 시마네현(어업권 허가번호: 해 제2456호)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6월 17일

### 다케시마 주변 특별단속 및 조사 시행

해상보안청은 시마네현 수산시험장의 시마네마루(No.2 참조)가 한국인 어부가 상륙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 1953년 6월 17일에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밀항과 불법어로 단속 강화」를 결의하였다. (Ref.1)

#### 출처

#### Ref.1:

해상보안청 총무부 정무과편 「해상보안청 30년사」(해상보안협회 1979 년), pp.28-29

#### 참고 자료

해상보안청 추억편집위원회편 「해상보안청의 추억」(해상보안협회 1979 년), pp.174-178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6월 18일

# 시마네현이 오키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해산물 어업권을 허가

1953년 6월 18일, 시마네현지사는 어업법(1949년 법률 제267호)에 따라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산물(미역, 돌김,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해삼, 문어, 성게) 공동 어업권을 오키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허가하였다(존속기간: 1953년 6월 18일~1961년 8월 31일). (Ref.1)

보충설명: 해당 공동어업권은 그 후 10년마다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출처

Ref.1:

「시마네현 고시1953년 제352호」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6월 27일

### 해상보안청·시마네현에 의한 상륙 조사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밀항과 불법어로 단속 강화(1953년 6월 17일)」방침에 따라 1953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다케시마 주변의 밀항 및 불법어로 단속을 시행하였다(제1차 특별단속). 이 단속은 오키, 구즈류, 노시로 등의 순시선을 이용하여 시마네현과 합동으로 시행하였다. 6월 22일 16시 30분에 사카이항을 출항해 다케시마 주변에 도착하였으나 강풍으로 오키섬에 돌아갔고, 6월 26일 18시에 우라고항에서 오키, 구즈류가 출항, 6월 27일 3시에 다케시마 주변에 도착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13명이 다케시마(동도)에 상륙하였다. (Ref.1)

상륙 직후 한국인 6명을 발견하고 조사를 한 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불법 입국 및 어업법 위반임을 알리고 퇴거하도록 경고했으나 한국인은 그곳에 동력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마중 오는 배가 오는 대로 돌아가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이 한국인들이 어획하던 것은 미역, 전복, 우뚝가사리였으며 한국 관청의 어업 허가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또, 영토에 관한 개념은 없고, 다른 어업자가 매년 이 시기에 미역을 따러 오기 때문에 자신들도 왔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의 청취 내용은 '다케시마 조사 보고서'라는 조서로 작성되어 있다. (Ref.1)

또한, 상륙 조사 시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거친 외국인 이외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 3리(섬 해안에서3리)내의 출입을 금할 것, 다케시마(연안 도서 포함)의 주위 500미터 이내는 제1종 공동어업권(해조 및 조개류)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무단 채취를 금한다는 내용을 적은 표시를 설치하였다. 조사 후 8시 25분에 귀로에 올랐다. (Ref.1)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장으로부터 해상보안청 경비 구난(警備救難)부장 앞으로 송부되어 있다. (Ref.1)

#### 출처

#### Ref.1:

「8관공기밀 제200호(1953년 7월 1일)」(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개시 자료)

#### 참고 자료1:

「시마네현·해상보안청 합동 다케시마 조사 복명서」(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소장)

#### 참고 자료2:

해상보안청 총무부 정무과편 『해상 보안청 30년사』(해상보안협회1979년 5월), pp.28-29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7월 12일

### 순시선 '헤쿠라'가 다케시마에서 총격을 당하다(제4차 특별단속)

1953년 7월 12일, 다케시마 부근에서 사카이 해상보안부의 순시선 '헤쿠라'가 한국 선박으로부터 수습 발의 총격을 받았다. 헤쿠라는 7월 12일 아침 다케시마로 향해 상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리(울릉도 경찰국 소속)가 헤쿠라에 와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헤쿠라의 해상보안관이 일본 영토라고 반박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귀선하였다.

그 후 헤쿠라는 다케시마를 한 바퀴 돌아서 사카이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케시마의 중턱, 헤쿠라에서 70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수습 발의 총격을 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에 탄흔이 2개 생겼다. 그때의 조사에서는 일본 측이 세운 표시는 철거되어 있었고, 섬에 온 한국인이 약 40명, 그중 경찰관이 7명으로 추정되었다. 또, 선박은 어선 3척, 전마선 1척으로 무기는 어선 1척에 자동소총 2정이 장비되어 있었으며 경찰관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헤쿠라는 같은 날 17시 30분에 사카이항으로 귀항하였다. (Ref.1)

출처

Ref.1:

「8관공기밀 제221호(1953년 7월 13일)」(해상 보안청 제8관구 해상 보안부 개시자료)

참고 자료

[제16회 국회참의원본회의의사록 제22호\(1953년 7월 15일\), pp.9-10](#)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8월 3일

### 다케시마 주변 해역 제 5 차 특별단속

1953년 7월 12일 제 4 차 특별단속에서 순시선 헤쿠라가 총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국 함정이나 관헌이 다케시마에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향후 단속에 대해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장실에 각 순시선의 선장이나 관계관들이 모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8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순시선 헤쿠라로 제5차 특별단속이 시행되어, 8월 3일 8시부터 11명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Ref.1)

상륙 시에 한국 관헌이나 어민은 없었고, 최근에 한국인이 섬에 방문한 흔적도 없었다. 제 8 관구 해상보안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어업 기간이 지나 한국 어민은 어업조사 이외에는 섬에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서도에서 제4차 특별단속 때 헤쿠라에 총격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산 증턱에서 자동 소총탄으로 보이는 실탄과 탄피 등이 발견되었다. (Ref.1)

제 1 차 특별단속(상륙 조사) 때 일본의 영토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했으나, 이 표시가 철거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급조된 화덕(양철제) 및 전복 조개껍질 12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Ref.1)

출처

Ref.1:

「8관공기밀 제260호(1953년 8월 5일)」(해상 보안청 제8관구 해상 보안 본부개시자료)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3년 10월 6일

### 다케시마 주변 해역 제10차 특별단속

제10차 특별단속이 1953년 10월 6일에 시행되었다. 이때, 다시 일본의 표시가 설치되었다. (Ref.1)

출처

**Ref.1:**

「제10차 다케시마 특별단속 설표 사진(1953년 10월 6일)」(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 보안 본부 개시자료)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4년 8월 23일

### 순시선 '오키'가 총격을 받다(제28차 특별단속)

1954년 8월 23일,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가 다케시마 근해를 초계 중(제28차 특별단속 시행 중) 서도 북방 동굴의 북북서에 700미터 정도 접근했을 때(8시 40분), 갑자기 동굴 부근에서 약 400발의 소총 또는 자동소총의 총격을 받아 피탄되었다(첫발이 우현 조타실의 전지실 환기 장치를 관통하여 조타실의 포켓 스크린에 맞고 바닷속으로 낙하하였다. 상당수의 탄환이 조타실 감시원의 머리 위를 통과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키는 즉각 북북서로 대피해 8시 48분에 다케시마로부터 총격 사정권 밖인 3해리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변 조사에 임하였으며,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 조사에서 동도(메지마) 북단에 하얀 삼각형 망루 형태의 등대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철탑 구조, 높이 약 6m). 그 외에도 서도 남쪽의 절벽 아래에 한국어 문자 두 개가 적혀 있는 것, 동도 서안에 목재 수십 개가 바위에 기대어 세워놓은 것 등이 확인되었다.

출처

Ref.1:

「8관공비밀 제188호(1954년 8월 25일)」(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 보안본부 개시 자료)

참고 자료

[제19회 국회 참의원 내각 위원회 회의록 제4호\(1954년 9월 21일\), p.7](#)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4년 9월 25일

###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한국에 제의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 자 구술서에 따라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였다. (Ref.1)

#### 출처

#### Ref.1:

외무성정보문화국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한국 정부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 「해외 조사 월보」4권 11호, 1954.11, pp.64-71

#### 참고 자료

[한국]외무부 정무국 『독도문제개론』1955, pp.205-207, 부록pp.111-112(외교 문제 총서 제11 호)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4년 10월 28일

###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

1954년 10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서면으로 거부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법적으로 위장한 가운데 부당하게 영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시도하여 존재하지 않는 영토 문제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또, 동시에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따른 최초의 희생 지역이다. 일본 정부가 하는 부당하고 집요한 독도에 대한 주장은 일본이 또다시 침탈을 반복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Ref.1)

출처

Ref.1:

[한국]외무부『독도관계자료집(I)-왕복 외교 문서(1952~76)-』1977, pp.119-121(영어)

## 1. 영유권—법과 역사 (3)

1954년 11월 21일

### 순시선 '오키' 및 '헤쿠라'가 포격을 당하다(제30차 특별단속)

1954년 11월 21일 오전 6시 무렵 다케시마에 도착한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와 '헤쿠라' 두 척이 남쪽과 북쪽 양쪽에서 각각 조사를 하던 중(제30차 특별단속) 서도(오지마) 북서쪽 약 3.2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헤쿠라'가 갑작스럽게 5발의 포격을 당하였다(6시 58분에서 7시 1분 사이). 포탄은 순시선에서 약 1해리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으며 피해는 없었다. 그때 동도(메지마) 중앙 부분에 통신탑이 서 있고, 그 부근에 14, 5명 정도의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확인되었다. 그 동쪽의 통신탑에는 한국 깃발이 게양되어 있었다. (Ref.1)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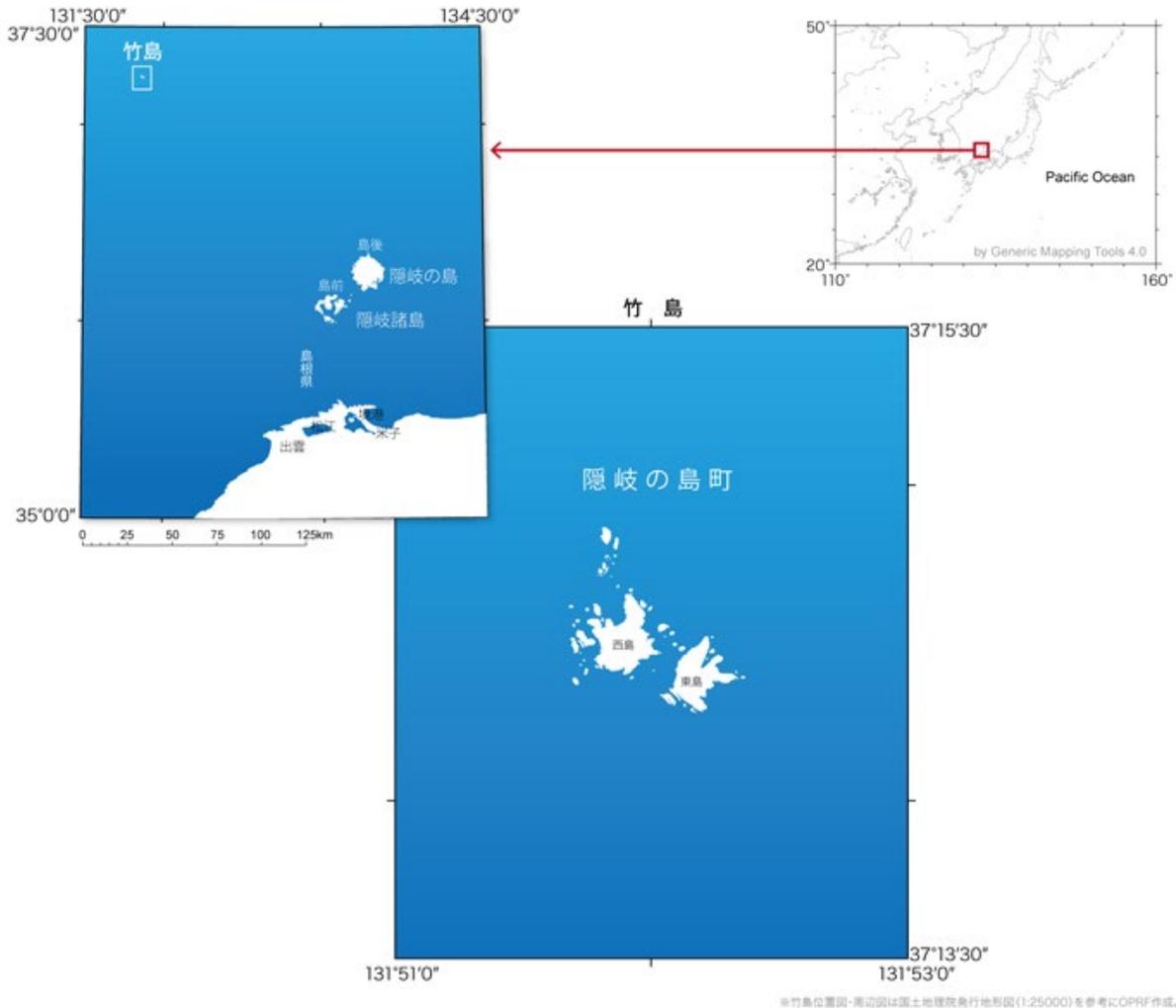
Ref.1:

「8관공비밀 제275호(1954년 11월 24일)」(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개시자료)

참고 자료

[제20회 국회 중의원 내각 위원회 회의록 제2호\(1954년 12월 3일\), pp.5-6](#)

## 2. 지리



다케시마는 오키제도 북서쪽 약 158km,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일본해에 위치한 군도로, 동도(메지마), 서도(오지마) 2개의 섬과 주변 암초로 되어있다. 동도(메지마)의 최고 해발은 97m, 서도(오지마)는 168m(Ref.1)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해 있으며(Ref.2), 총면적은 약 0.21km<sup>2</sup>(Ref.3)이다. 1906년 시마네현의 조사에서는 해안은 모두 절벽이고, 특히 서도(오지마)는 지형이 가파르고 잡초 이외에는 눈에 띄는 식생이 없고, 동도(메지마)는 화산질의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도(오지마)는 안산암과 현무암의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Ref.4)

Table: 다케시마의 제원(Ref.1)

섬 이름	위도	경도	높이(해발)
동도(메지마)	37.241	131.870	97m
서도(오지마)	37.242	131.865	168m

※위도경도·높이(해발)는 국토지리원 전자국토기본도를 참고하여 OPRF 작성.

## 지질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지질에 대해 1906년(메이지 39년)에 시마네현의 시찰단이 조사한 보고가 남아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동도는 순수 분화구는 없으나 안산암으로 구성된 해중 분화산이며, 서도는 안산암질의 응회암이 존재하고 있다. (Ref.4)

※첨부된 지질도에는 동도가 안산암질의 응회암, 서도가 안산암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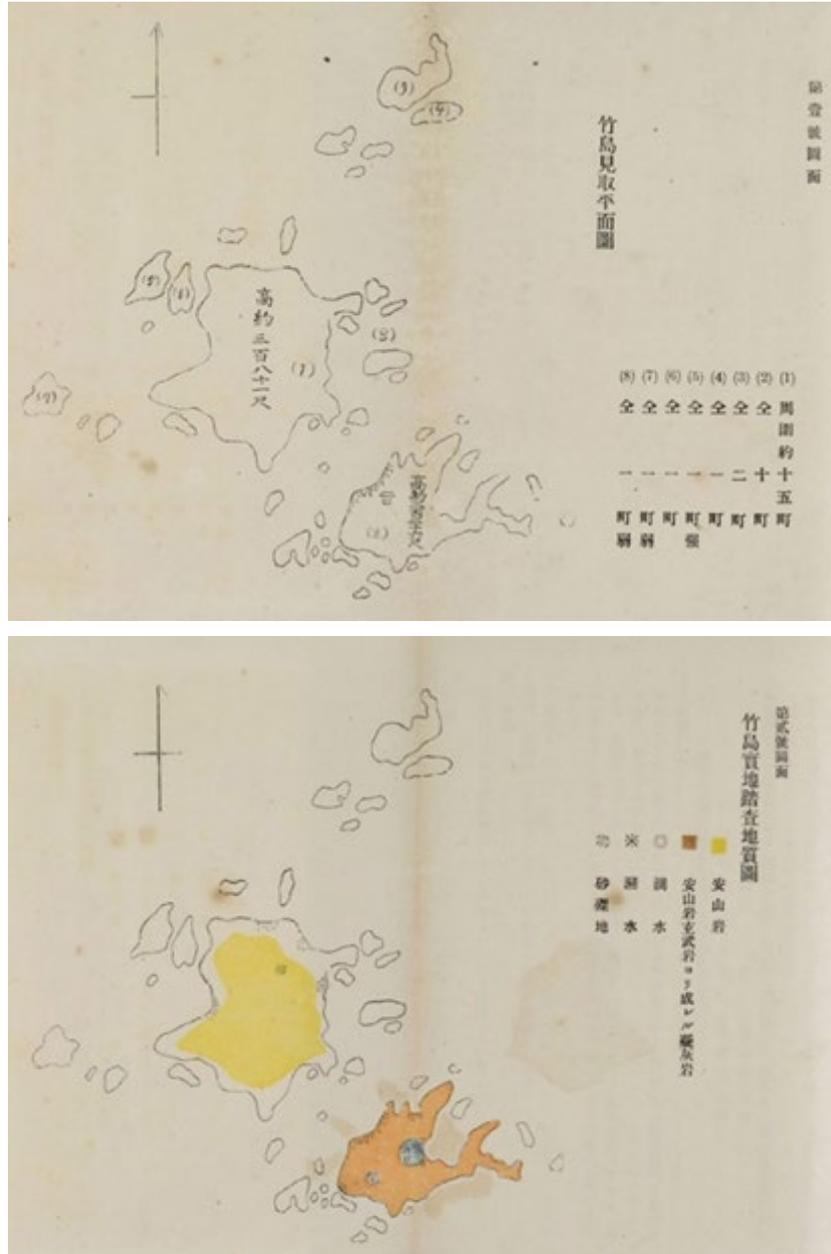


그림: 1909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다케시마의 지질도(『竹島及鬱陵島』에서 발췌)

### 출처

Ref.1: 전자국토기본도(국토지리원)

Ref.2: 국토지리원 발행1 :25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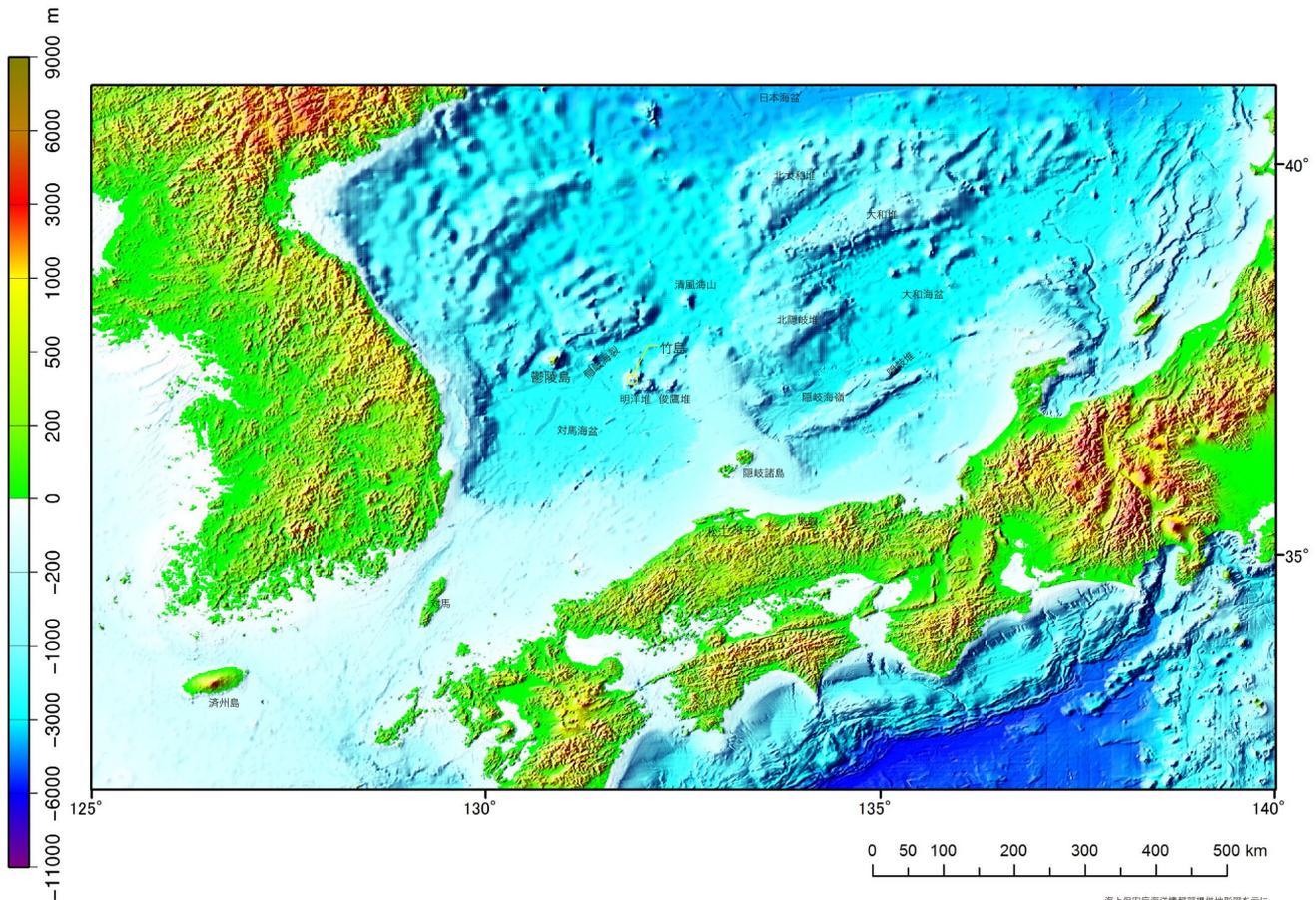
Ref.3: 헤이세이 25년(2013년) 전국도도부현시구정촌별 면적조사 (국토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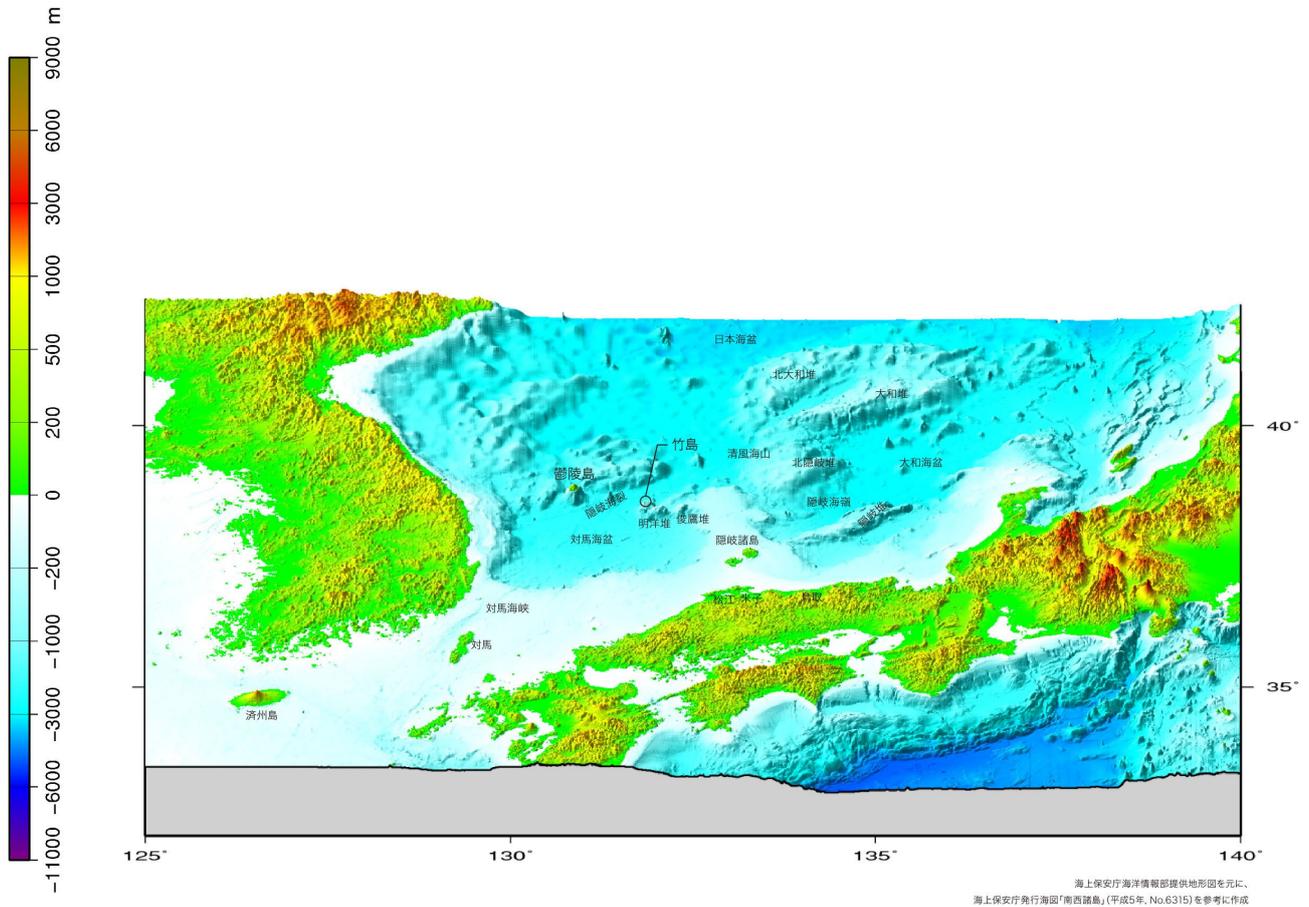
Ref.4: 오쿠하라 헤키운『다케시마 및 울릉도 』(1907)

# 3. 해양·기상

##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지형

다케시마는 수심 2,000~2,500m의 쓰시마분지 북동부에 위치하며 가파른 지형을 하고 있다. 다케시마와 울릉도 사이에는 오키해열이라고 불리는 골짜기 지형이 가로지르고 있다. 동쪽에는 메이요퇴(최고부 수심 159m), 순요퇴(동137m)라고 불리는 해중 고지대가 존재하며, 오키제도에서 북쪽으로 뻗은 해각지형에 이른다. (Ref.1)





출처

Ref.1: 해상보안청 간행『일본근해 해저지형도 제 1』헤이세이 19년(2007년) 3월 23일

## 4. 생태계

다케시마의 생태계에 대해 1906년 시마네현의 시찰단이 조사한 보고가 남아있다. 그에 따르면 해산 동물은 비교적 많으며 강치, 갈매기, 가마우지, 거북손, 굴, 따개비, 전복, 삿갓조개, 홍합, 말미잘, 썸뱅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Ref.1)

식물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에는 표면의 토양이 얼마 되지 않고, 나무도 없어 잡초가 군데군데 있을 뿐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동도의 정상에 올라가서 확인한 바로는 호장근, 꿩의비름, 갯패랭이꽃, 갯씀바귀가 기록되어 있고, 해조류는 모자반, 꼬시래기, 우뚝가사리, 바닷말이 기록되어 있다. 서도(오지마) 정상에도 올라갔지만 동도(메지마)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어 있다. (Ref.1)



사진: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제공

### 출처

**Ref.1:**  
오쿠하라 헤키운『다케시마 및 울릉도』(1907년)

## 5. 산업

다케시마의 산업에 대해 1903년 무렵부터의 상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목차 ※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903년 무렵	다케시마 도항, 출어 상황	열람하기
1904년 9월 29일	다케시마의 상황 설명	열람하기
1905년 5월	강치 어업 허가신청서 제출	열람하기
1905년 5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 준비	열람하기
1905년	다케시마 어렵(漁獵) 합자회사 설립	열람하기
1905년~	竹島漁獵合資会社の経営状況	열람하기

## 5. 산업

### 1903년 무렵

## 다케시마 도항, 출어 상황

메이지 36년(1903년), 하시오카 도모지로, 이구치 류타로 등 7 명이 다케시마에 도항해(5월) 움막을 짓고 거주하며 강치 포획과 제조로 각각 나누어 활동하였다. 강치는 작은 배 두 척을 타고 포획하고, 가죽·고기·기름 등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것은 오사카에 팔았고 가격의 총액이 1,960엔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Ref.1)

메이지 37년(1904년)에도 하시오카 도모지로, 이케다 기타지로 등 11명이 다케시마에 도항해(4월) 전년과 동일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가격의 총액은 4,235엔이었다고 되어있다. (Ref.1)

또, 이러한 활동을 하며 시마네현에 보고한 자본금 지출내역이나 사업자·종사자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Ref.2)

### 출처

**Ref.1:**

「수 제906호(1905년 4월 18일)」『다케시마 대여 강치어업 서류』(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2:**

「36년도 자본금 지출」『다케시마 대여 강치어업 서류』(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 5. 산업

1904년 9월 29일

### 다케시마의 상황 설명

나카이 요자부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을 신청하는데 있어(1. 영유권-법과 역사 「1904년 9월 29일 나카이 요자부로는 일본 정부에 영토 편입 및 대여를 신청」을 참조), 그 목적을 적은 설명서를 첨부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여를 청하는

목적은「利益ヲ永久ニ保全センガ為メ本島ノ海驢ヲ左ノ如ク保護シ其ノ捕獲ヲ制限シ及ビ別ニ設備ヲ完全ニシテ捕獲品ヲ十分ニ製造セントスルニ外ナラザルナリ」(이익의 독점이 아니라, 이익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강치를 보호하고, 포획을 제한하며, 설비를 완전하게 하여 포획한 강치에서 나온 생산품을 충분히 제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Ref.1)

그중에서 나카이는 신장이 8척(240cm) 이상인 수컷 이외에는 포획하지 말 것, 1 기간에 원칙적으로 500마리 이상 포획하지 말 것, 포획 마릿수에 관한 보완 사항 및 기타 부속 지도를 붙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Ref.1)

#### 출처

**Ref.1:**

「리양코'섬 영토 편입 및 대여 신청 설명서(1904년 9월 29일)」『다케시마』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 5. 산업

### 1905년 5월

## 강치 어업 허가신청서 제출

나카이 요자부로, 가토 주조,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로는 메이지 38년 (1905년) 5월 20일 자로, 메이지 38년 (1905년) 6월부터 메이지 41년 (1905년) 5월까지 다케시마를 비롯한 그 주변에서의 강치 어업 허가를 공동으로(※당초 그 외에도 신청자가 있었다) 시마네현지사에게 신청하였다(Ref.1). 이후 메이지 41~44년 (1908~1911년), 44~49년 (1911~1916년), 다이쇼 5~10년 (1916~1921년)의 기록이 남아있다. 메이지 41년 (1908년) 그리고 메이지 44년 (1916년)부터 신청자는 나카이 요자부로, 가토 주조, 하시오카 도모지로이고, 다이쇼 5~10년 (1916~1921년) 신청 기록에는 나카이 요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가토 주조로 되어있다(Ref.2·Ref.3·Ref.4).

### 출처

**Ref.1:**

「강치 어업 허가원(1905년 5월 20일)」『다케시마』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2:**

「강치 어업 허가원(1907년 6월 28일)」『다케시마 대여 강치 어업 서류』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3:**

「강치 어업 허가원(1910년 6월 25일)」『쇼와 28년도 다케시마 관계철』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4:**

「강치 어업 허가원(1915년 4월 30일)」『쇼와 28년도 다케시마 관계철』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 5. 산업

1905년 5월

###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 준비

나카이 요자부로, 하시오카 도모지로, 이구치 류타, 가토 주조, 이 4명은 다케시마에서 강치 어업을 합동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오키도사(히가시 분스케)에게 신청하였다. 4명이 상의하여 정한 규약 사본을 첨부하였다. 규약에는 합동 조직을 합자회사로 하고, 스키군 사이고초에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과 함께 4명의 권리와 자본금 출자 비율, 수익금의 취급 등을 정하였다. (Ref.1)

출처

Ref.1:

「신고(1905년 5월 20일)」『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 5. 산업

1905년

### 다케시마 어렵(漁獵) 합자회사 설립

1905년(메이지 38년) 6월 12일, 나카이 요자부로, 하시오카 도모지로, 이구치 류타, 가토 주조 4명은 다케시마 어렵 합자회사의 대표자를 나카이 요자부로로 한다는 내용을 시마네현지사(마쓰나가 다케키치)에게 신고하였다. (Ref.1)

또, 이들 4 명은 오키도사(히가시 분스케)에게 다케시마 어렵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6월 6일 자로 법원에 등록했다고 신고하였다(1905년 6월 13일 자). 거기에는 다케시마 어렵 합자회사의 정관 및 사내 규약이 첨부되어 있고, 회사의 목적인 다케시마 강치 포획 제조 판매, 출자액, 경영에 관한 약정이 적혀 있다. (Ref.2)

#### 출처

**Ref.1:**

「대표자 신고(1905년 6월 12일)」『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2:**

「다케시마 어렵 합자회사 설립신고(1905년 6월 13일)」『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 5. 산업

1905년~

### 다케시마 어업 합자회사의 경영 상황

1905년(메이지 38년), 다케시마 어업 합자회사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의 강치 어업 실적 기록으로 남아있다. 메이지 38년은 출연금 2,996엔 57전 9리에 대해 수익은 753엔 18전 5리, 남은 부채는 2,243엔 39전 4리였다. 회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은 어업자가 남획을 해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생산품의 판로 개척이 향후 회사 운명과 관련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Ref.1)

또, 메이지 38년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6월 10일(시업)부터 9월 8일(종업)까지의 포획 마릿수 추이를 수컷, 암컷, 어린 강치로 구분해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수컷의 포획 마릿수는 534마리, 암컷의 포획 마릿수는 339마리, 새끼의 포획 마릿수는 130마리로 합계 1,003마리였다. (Ref.2)

1906년(메이지 39년)의 경영도 어려웠다는 것이 다른 기록에 남아있다(Ref.3).

#### 출처

**Ref.1:**

「메이지 38년분 다케시마 강치어업 성적(1905년 10월 30일)」『다케시마』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2:**

「다케시마 강치 어업 성적도 메이지 38년」『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Ref.3:**

「메이지 39년도 업무 집행 전말」『다케시마 대여 강치 어업 서류』(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 6. 환경

다케시마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하는 관점에서 본 환경에 대해, 1906년(메이지 39년) 시마네현 시찰단이 조사한 식수 및 생활 상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 식수

식수에 관해서는 섬 안에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으나 서도(오지마)에 물웅덩이가 한 곳 있다고 한다. 다만 바닷물과 빗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동도(메지마) 중턱에는 토양 속을 통과한 빗물로 보이는 물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담황색을 띠고 소량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또한 식수로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도 시행하였다(아래 표). 따라서 다케시마에 출어하는 어업자는 모든 식수를 오키섬에서 수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Ref.1)

항목	결과(‰)
유기질	33.000이상(다량)
아질산	비검출
격노아(염소: Chlorine)	960.300
석회	다량
황산	중량
철	비검출
암모니아	흔적
고토(산화마그네슘)	미량
질산	비검출

### 생활 상태

같은 보고서에는 동도(메지마) 연안에 모래와 자갈로 된 좁은 해변이 있고, 여름에는 어로 활동 종사자가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다케시마 어업 합자회사의 오두막이 2동 있다고 되어있다. 모든 어선들은 이 해변 위에 끌어올리지만, 풍량이 거셀 때는 종종 파손,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 또 암석 붕괴의 위험이 있으나 그 외에는 오두막을 지을 장소가 없다고 되어 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거주에 필요한 것이 부족해 애초부터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다만 수년 전부터 강치잡이꾼이나 잠수기 어업자가 전복 채취를 위해 오는 정도라고 하며, 거주환경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Ref.1)

### 출처

Ref.1: 오쿠하라 헤키운『다케시마 및 울릉도』(1907년)

## 7. 보충설명

7. 보충설명에서는 각 카테고리에 관련된 참고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목차 ※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954년 5월 3일      중단 전 마지막 어업권 행사에 대하여

열람하기

출처

Ref.1: 오쿠하라 헤키운『다케시마 및 울릉도』(1907년)

## 7. 보충설명

1954년 5월 3일

### 중단 전 마지막 어업권 행사에 대하여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은 한국의 불법 점거로 중단되어 있으나 중단 전 마지막 어업권 행사는 1954년 5월 3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시마네현의 협조하에 구미 어업협동조합 11명이 시행했으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그들을 호위하는 방식이었다. 구미 어협 조합장이자 출어를 했던 와키타 토시씨가 남긴 일지가 일련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기록에 따르면, 5월 1일에 구미항에서 시마네현 어업 단속선 '시마가제'를 타고 출항하여 벳푸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합류하여 다케시마를 향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대기하다가 벳푸항을 출항한 것은 5월 2일 밤이었다.

5월 3일 10시 무렵, 다케시마에 도착하여 동도와 서도의 사이로 들어가 닻을 내리고, 3척의 배로 나뉘어 각각의 지점으로 가서 조업을 시작하고 미역을 채취하였다. 기상 악화로 오후 2시가 지나서 다케시마를 출발하여, 5월 4일 오후에 돌아왔다.

#### 참고 자료

와키타 토시「다케시마 어업권 행사의 경과」(1954년)